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-91 호

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09월 18일

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

1. 조 례 명 : 「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안이유

ㅇ 상위 법령인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사항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구체화하며,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및 목적 등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(제명, 안 제1조 ~ 제3조)
나.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내용 구체화 및 위원회 명칭 등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다. 자살예방센터 운영 정비 및 자살시도자 등 지원 대상 명확화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안 제9조)
라. 포상 근거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12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09월 23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 출 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reho@korea.kr

라. 문 의 처 : (044) 300-7313

붙임 :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”를 “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”을 “시민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자살”을 “자살을 할”로, “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”를 “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책무)”를 “(시장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”을 “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”로,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자

살 상담 메뉴얼”을 “자살예방 상담 매뉴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자살”을 “자살예방”으로, “육성”을 “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지역사회”를 “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시장”을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”으로 한다.

6.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

제5조의 제목 “(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)”를 “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예방시책”을 “자살예방시책”으로, “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”를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”를 “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자살관련”을 “자살 관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살 시도자”를 “자살시도자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민간기관”을 “민간 기관”으로 한다.
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
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
제8조제2항 중 “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”을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)”을 “(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”를 “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”로, “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”을 “자살시도자 등에게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비밀누설의 금지)”를 “(포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「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	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시민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------- ----------.
제2조(권리와 의무) ① (생 략)	제2조(권리와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,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,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자살을 할 ---------- ----------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

하여야 한다.	행해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)	제4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)
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① ----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자살 상담 메뉴얼 개발 및 보급	3.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------
4. 교육 및 홍보시책	<삭 제>
5. (생 략)	4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신 설>	6.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
6. 자살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	5. 자살예방 ---------- 교육 ----------
7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	7.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---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9. -----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----------
제5조(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)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	제5조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) ① ---------- 자살예방시책---------- ---------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	③ ----------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----------.
제6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6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----------.
1. 자살관련 상담	1. 자살 관련 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	3. 자살시도자 등 ----

<신 설>	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	<삭 제>
<신 설>	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6. (생 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「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	② ----------민간 기관----------.
제8조(교육·홍보 등) ① (생 략)	제8조(교육·홍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, 산하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----------.
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)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9조(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------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---------- 자살시도자 등에게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민간단체 지원) ①·② (생 략)	제10조(민간단체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시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·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1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1조(포상)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「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의2(심리부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,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·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2. 6. 10., 2025. 11. 11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24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2. 2. 3.>

1.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2.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
3.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

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현 미

[붙임 3]

현 행 조 례

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

(보건복지국 돌봄건강과)

(제정) 2013.01.07 조례 제 277호

(일부개정) 2023.03.06 조례 제2104호

(일부개정) 2024.11.11 조례 제262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, 2023. 3. 6.>

제2조(권리와 의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,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,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, 2023. 3. 6.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.

제4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
2. 생명존중문화의 조성
3. 자살 상담 메뉴얼 개발 및 보급
4. 교육 및 홍보시책
5. 아동·청소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
6. 자살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
7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8.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)

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<개정, 2023. 3. 6.>

제6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자살관련 상담
2.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
3.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6.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「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<개정, 2023. 3. 6.>
제7조(자살통계 분석 등)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.
② 자살통계는 반드시 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으로 자살실태의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.
③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8조(교육·홍보 등)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시장, 산하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제9조(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)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·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제9조의2(심리부검)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,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·행동 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[본조신설, 2024. 11. 11.]
제10조(민간단체 지원)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·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.
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시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·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제11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조례 제2104호, 2023. 3. 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조례 제2622호, 2024. 11. 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